제정 2012년 9월 1일 훈령 제228호

- 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「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」제26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44조에 따라 오산시 택시운송사업에 종사하는 운전자의 복장착용 및 카드결재기 설치와 그 행정지도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- 제2조(적용범위) 오산시 택시운수종사자의 복장착용·카드결재기 설치 및 행정지도에 관하여 관계법령 등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를 따른다.
- 제3조(복장지정) 택시운전자의 복장은 단정한 복장을 원칙으로 하되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바와 같이 개인택시·일반택시 및 각 교통관련 봉사단체별로 자율적으로 복장을 지정할 수 있다.
 - 1. 개인택시운전자의 복장은 오산시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에서 조합원들의 의견을 모아 선정한다.
 - 2. 일반택시운전자의 복장은 회사별로 노동조합과 협의하여 선정한다.
 - 3. 모범운전자회 등 운전자로 구성된 봉사단체는 각 단체별로 별도 선정할 수 있다.
 - 4. 택시운전자의 복장 지정시 승객에게 혐오감을 주지 않도록 검정색 계열 의 구두 또는 운동화를 착용하여야 하며, 하절기에는 끈달린 샌달을 착 용할 수 있다.
 - 5. 택시운전자 복장을 지정 또는 변경한 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·일반택시회사 및 봉사단체에서는 복장착용 1개월 전에 택시운전자 복장(변경)지정서(별지 제1호서식)를 오산시 교통담당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.
- 제4조(복장착용) ① 택시운송사업에 종사하는 운전자는 승객에 대한 서비스 향상과 이미지를 높이기 위하여 승무시 계절에 맞는 지정된 복장 등을 착용하여야 한다. 다만, 지정복장의 세탁 등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는 예외로 인정한다.
 - ② 일반택시운송사업자는 운전자가 승무하기 전에 복장착용 상태를 점검한 후 승무하도록 하여야 한다.

- ③ 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과 교통관련 단체에서는 소속원들이 지정된 복장을 착용하도록 적극 안내하여야 한다.
- 제5조(불량한 복장착용 금지) ① 택시운전자는 승무시 단정한 복장 또는 지정된 복장을 착용하여야 하며 특히 불량한 복장으로 승객에게 혐오감을 주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.
 - ② 불량한 복장의 예는 다음과 같다.
 - 1. 슬리퍼 또는 끈이 달리지 않은 샌달을 신거나 맨발로 운전하는 것
 - 2. 반바지를 입고 운전하는 것
 - 3. 소매없는 셔츠 또는 티셔츠 차림으로 운전하는 것
 - 4. 가슴을 훤히 드러낸 채로 운전하는 것
 - 5. 트레이닝(츄리닝) 복장으로 운전하는 것
 - 6. 그 밖에 승객에게 혐오감을 줄 수 있는 복장으로 운전하는 것
- **제6조(카드결재기의 설치)** 택시운송사업자는 카드결재기를 설치하여야 하며, 승객의 요구가 있을 시 반드시 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.
- 제7조(벌칙규정) 이 규정에서 정한 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운송사업자 및 운수종사자에게는 「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」 제26조 및 제94조, 같은법 시행 령 제49조제1항에 따라 행정처분을 하되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기준을 따른다.
 - 1. 지정복장 미착용으로 1회 적발시 경고 처분(제4조제1항 단서에 해당될 경우 제외)
 - 2. 지정복장 미착용으로 1년 이내 2회 이상 적발시 10만원의 과태료 처분 (제4조제1항 단서에 해당될 경우 제외)
 - 3. 불량한 복장으로 적발시 10만원의 과태료 처분
 - 4. 카드결재를 거부한 경우 10만원의 과태료 처분
 - 5. 제2호부터 제4호에 따른 처분을 받은 후 3월 이내 추가 적발시 2분의 1 범위에서 과태료 가중 처분하며, 처분(적발) 회수에 비례하여 「여객자 동차운수사업법」에 의한 상한액 범위에서 지속 가중처분 할 수 있다.
 - 6. 위반기간 및 횟수는 적발일자를 기준으로 산정한다.
 - 7. 본 벌칙규정과 함께 콜의 배차정지를 명할 수 있다.
 - 가. 본 규정 및 「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」위반으로 경고처분을 받은 경우 : 1일 정지
 - 나. 본 규정 및 「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」위반으로 과태료 처분을 받은

(추 1)

경우

- (1) 과태료 금액이 10만원 이하 : 2일 정지
- (2) 과태료 금액이 20만원 이하 : 3일 정지
- (3) 과태료 금액이 30만원 이상 : 5일 정지

제8조(의견제출) 택시운전자 복장착용 및 카드결재기의 설치·영수증발급 위반과 관련하여 행정처분을 함에 있어 필요할 경우 「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」에 따른 이의신청 절차 외에 사전에 당사자에게 의견 제출의 기회를 줄 수 있으며, 의견제출과 관련해서는 「행정절차법」을 준용한다.

부칙

이 훈령은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644 - 3 (추 1)

[별지 제1호서식]

택시운전자 복장(변경)지정서

1. 업체(단체)명 :

2. 대 표 자 :

3. 주 소:

4. 복장(변경)지정 내용

구	분	상	의	하	의	구	두
하	복						
춘 추	· 복						
동	복						

5. 특기사항 :

덧붙임: 계절별(변경) 지정복장 착용 사진 각 1매. 끝.

위와 같이 택시운전자 복장(변경)지정서를 제출합니다.

년 월 일

업체(단체)명 대표자 직인

오 산 시 장 귀하

(추 1) 644 - 4